프리랜서 용역계약서

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주식회사 000 (이하 "갑")이 000 (이하 "을")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계약의 범위)

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

2.

제3조 (계약기간 및 계약금액)

-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.
- ②총 계약금액은 금 00원정으로 한다.
- ③대금 지급은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00%,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 00%를 지급하며,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00은행(계좌번호:)로 입금한다.

제4조 (납품일정)

을은 작업 진행중 중간 완료된 성과물을 00년 00월 00일, 00년 00월 00일, 00년 00월 00일 총 3회에 걸쳐 중간 납품하기로 하며,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납품하기로 한다.

제5조 (협조의무)

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작업수행을 위한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 (비밀유지)

을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.

제7조 (품질)

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,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00%만을 지급하기로 한다.

제8조(계약의 해지)

- ①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해지의 효과)

- ①전조 제1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갑은 잔금의 00%인 금 원정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.
- ②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(총 계약금액의 00%) 외 갑은 을에게 나머지 용역 수행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
- ③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잔금(총 계약금액의 00%) 중 00%인 금 00원정을 용역수행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한다.

제10조(손해배상)

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손해배상액은 금 00원정으로 한다.

제11조(해석)

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.

제12조(소송관할)

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00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| 갑 | 주소 | | |
|---|-----|------|-----|
| | 상호명 | 대표자명 | (인) |
| 을 | 주소 | | |
| | 상호명 | 대표자명 | (인) |